

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6월 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6월 14일

제1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축과장 김시일

나. 제안이유

- 본 매입대상 토지는 2001년부터 시행중인 신평1동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내 개인사유지로서 주민쉼터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매입코자 하며,
- 대지의 위치·규모·형태로 보아 주민휴식공간 조성지로서 활용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한 재산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쉼터 조성을 위해 매입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토 지 : 1필지 831m²
- 건 물 : 5동 208.56m²
- ※ 보상후 멸실조치
- 예정가격 : 380,013천원(감정가격 기준)

【처분재산】

- 건 물 : 5동 208.56m²(지상 1층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유지를 취득,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임.
- 따라서, 토지 1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고, 건물 5동은 보상후 처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